

산업안전지도사는 고용노동부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안전기사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있고,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안전기사의 업무영역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소관 관련법인 건설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부 소관의 기술사법에서도 기술사와 기사(예, 토목기사, 건축기사 등)의 업무영역을 다르게 규정하고 따라서 각각의 자격에 대한 역량기준도 다르게 적용하고 있듯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의 기준 업무영역 또한 타법과 마찬가지로입니다. 1995년 1월5일 산업안전지도사 제도가 제정(입법)될 때의 제정이유("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의뢰에 따라 각각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와 작업환경의 평가·개선 지도등을 행하도록 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의 유지·향상을 도모함."이라고 법령제정이유를 명시)를 보더라도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산업안전기사가 할 수 없던 안전관리 부분을 산업안전지도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에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내용은 산업안전기사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관련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정 이유를 보면 기술사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의 직무와 같이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사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의 직무 -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는 소관 부처가 다를 뿐 각각의 소관 부처에서 필요 하는 직무는 동일한 역량과 기술자문,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자격이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중이던 기술사의 역량등급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등급을 달리 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입법예고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의 자격지수는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 건축사가 동일하게 배점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